

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2022. 1.

계명대학교 교무처

1. 학칙 개정(안)

가. 개정 사유 및 내용

- 1)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입학생 모집근거 마련-제13조(모집단위와 모집인원)
- 2)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에 따른 입학 취소 관련 내용 반영에 따른 개정-제17조(입학절차)
- 3)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공동운영과목 학점 인정 근거 마련-제30조의1(이수학점)
- 4)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마이크로디그리 수여 근거 마련-제45조의3(마이크로디그리 수여)

나. 학칙 개정(안) 신규 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|--|---|
| <p>제13조(모집단위와 모집인원) ① ~ ④ (생략) <신설></p> <p>제17조(입학절차) ① (생략) ②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입시과정에서 부정으로 합격하였거나 지원 자격 미달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한 입학전형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30조의1(이수학점) ① ~ ⑥ (생략) <신설></p> <p>제45조(졸업인정과 학위수여) (생략) 제45조의2(복수학위와 공동학위 수여) (생략) <조 신설></p> | <p>제13조(모집단위와 모집인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」 제15조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은 「동법 시행령」 제10조3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입학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해당되거나 지원자격 미달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한 입학전형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30조의1(이수학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협약 대학 간 공동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45조(졸업인정과 학위수여) (현행과 같음) 제45조의2(복수학위와 공동학위 수여) (현행과 같음) 제45조의3(마이크로디그리 수여)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에 병행 표기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개정 학칙은 2022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지방대학의 의·약·간호계열 선발비율 조정에 따른 선발기준 신설</p> <p>입학부정행위관련 상위법변경에 따른 개정</p> <p>컨소시엄 대학 간 학점 교류에 대한 근거 마련</p> <p>마이크로디그리 학위증 표기에 대한 근거 마련</p> |

2.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가. 개정 사유 및 내용

- 1) 부전공 이수시 전공기초 이수학점 포함에 따른 개정-제17조(교과이수학점)
- 2)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공동 운영과목 계절학기 이수학점 근거 마련-제74조(이수학점)
- 3)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필수교양 대체 관련 재지정-부칙

나.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신규 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-|--|--|
| <p>제17조(교과이수학점) ① ~ ③ (생략) <신설></p> <p>제74조(이수학점)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「학칙」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6학점의 범위 내로 한다.(단, 취창업과자기계발 과목은 제외) <신설></p> | <p>제17조(교과이수학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부전공 학과(전공)의 전공기초과목을 이수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(6학점 이내)에 포함할 수 있다. 다만, 제1전공이수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과 부전공 학과(전공)의 전공기초과목이 동일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.</p> <p>제74조(이수학점) ① (내용 생략: 현행과 같음) ②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협약 대학 간 공동 운영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2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 ②(경과조치)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「생활영어회화」 대신에 「COMMUNICATION ENGLISH I, II, III」 중 1과목, 「실용영어」 대신에 「ACADEMIC ENGLISH I, II, III」 중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함</p> | <p>부전공이수시 전공기초이수학점 포함에 따른 내용 추가</p> <p>컨소시엄 대학간 학점교류를 위한 계절학기 이수학점 변경</p> <p>필수교양 대체과목 재지정</p> |